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623 발의연월일: 2022. 1. 28.

발 의 자:정점식·강대식·구자근

권명호 · 김석기 · 김희곤

송언석·양금희·유경준

전봉민 • 황보승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지역 중 거주 인구수가 현저히 적은 섬의 주민들은 해당 지역을 오가던 정기 여객선이 낮은 수익 등의 사유로 노선을 폐지하면 대체 교통수단으로 어선이나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현행법상 어선이나 낚시어선을 여객 운송에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이마저도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가 여의치 않아 여객선 운항이 없는 섬지역은 사실상 고립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 고 있음.

이에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행정선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신설).

법률 제 호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선(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다.

②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정선 이용에 필 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선박안전법」 제2조제1 ①호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선(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다. ②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정선 이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